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365
----------	---------

제안일자 : 2018. 2. 27
제안자 : 도시계획관리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위촉요건이 되는 근거법령을 수정하고 개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함.

2. 수정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3항제4호)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1. ~ 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4. 「장애인복지법」 <u>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u>	4. 「장애인복지법」 <u>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u>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④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전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생략)</p> <p>③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 설〉</p> <p>④ (생략)</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① 위원 중 심의·자문과 관련한 안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자문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u></p>	<p>제9조의2(시범사업 시행) 시장은 <u>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u></p> <p>제14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u>장애인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u></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u></p> <p>1. <u>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전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전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인 경우</u></p>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인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